

학 · 석사연계과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원 학칙 제3조(과정)에 의한 학·석사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계과정’ 이라 함은 학부의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학사학위과정을 3.5년(7학기), 석사학위과정을 1.5년(3학기)에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제3조(모집학과 및 인원) ① 모집학과는 일반대학원 전 학과로 한다.

② 선발 인원은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50% 범위 이내로 한다.

제4조(지원자격 및 신청) ① 연계과정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각 수료인정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직전학기까지 전체 성적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
3.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
- ② 학사학위과정의 제1전공과 유사한 해당 대학원 1개 학과에 한하며, 복수지원은 불허한다.
- ③ 연계과정의 신청은 매학기 1회 시행하며 지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출서류)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학과(전공) 전임교수(대학원 지도예정 교수) 추천서 1부
4. 연구활동 계획서(요구학과) 1부

제6조(전형방법) ① 서류전형 및 면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서류전형은 학사학위과정 성적, 추천서, 연구계획서 및 각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제7조(수업연한) ①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을 원칙으로 하며, 각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 3.5년
2. 석사학위과정 : 1.5년
- ②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추가로 단축할 수 없다.

제8조(졸업)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의 학사학위과정 졸업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7개 학기 이수(수료인정학점 이수)
2. 학사학위과정 전체 성적 평점평균 3.75 이상

제9조(등록/자퇴/휴학) ①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7학기까지 학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8학기 이후에는 해당 대학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은 자는 등록금 중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 후, 3학기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4학기 정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에는 자퇴 및 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인정한다.

제10조(학점인정) ①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대학원 교과목을 최대 6학점까지 학부에서 이수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과정에서 사전에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은 석사학위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해당 교과목의 성적등급이 B0 이상이어야 한다.

③ 학·석사연계 교과목은 학과(전공)에서 대학원 교과과정 편성 시 지정한다.

제11조(성적) 학사학위과정에서 개설한 교과목의 성적은 학사학위과정의 성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부여하며,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의 성적은 해당 대학원의 성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

제12조(자격유지) ①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7학기 수료 후 연계과정의 학사학위과정 졸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연계과정생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도 탈락되며, 해당 학생은 4학년 2학기(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하고, 「서울여자대학교 학칙」에 준하여 학사학위과정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021 제18차 교무위원회>)